

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 및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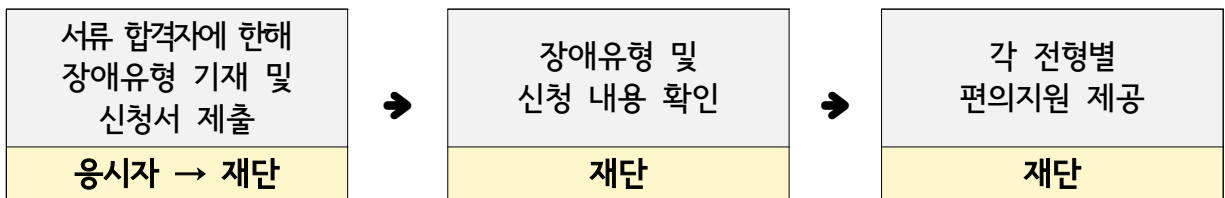
□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

○ 적용대상

-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자로서,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
○ 신청시기: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후

○ 신청 절차



○ 신청방법

- 편의제공 신청서에 장애유형·정도, 편의제공 신청 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(채용 홈페이지)
-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(채용 홈페이지)

○ 유의사항

- ‘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 및 안내’ 를 참고하여,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
-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
- 편의제공이 필요한 전형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

□ 편의지원 항목

○ 면접전형

장애유형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
지체장애	장애 정도가 심한 자/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	· 장애인 증명서
뇌병변 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	· 장애인 증명서
시각 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시요령 등 음성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	· 장애인 증명서
청각 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필답면접 허용 · 의사전달보조요원 입회 허용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	· 장애인 증명서

